

#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년 8월 21일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8월 31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9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 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02. 9. 9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이태섭)

### 가. 제안이유

-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하고(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제3항)
-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(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) 이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토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위탁의 취소(제10조제1항)규정 중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한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
  1.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  2.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  3.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할 때
  4.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근수)

-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한가족 생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그중 제10조 위탁의 취소 규정중 구체적인 판단이 모호한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
-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
- 동법 제5조제3항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,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
- 또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정이 모호하여 자칫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결정하였으므로
-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7. 기타사항 : 없음